4 소극행정 혁파

☐ 소극행정 정기 정검 시행 (년2회)

▶ 고질.반복민원 등 소극행정 형태. 부조리 사례 집중점검

☐ '소극행정 신고센터' 운영

▶ 소극행정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(감사규제팀)

☐ 소극행정 엄정조치

▶ 소극행정 적발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

▶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

유형	판단기준
적당편의	- 업무관련 중요한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 -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들과 타협 - 기타 사후 조치나 연관된 업무 등을 방치
업무해태	-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 미처리 및 늑장 대응 - 민원신청.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미처리 -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미이행
탁상행정	-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답습 - 효율적.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- 기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
관중심 행정	-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요구 -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 및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국민에게 전가 -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적으로 해석.활용하거나 법.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 -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피해

☐ 소극행정 신고센터

▶ 임실군 홈페이지(https://www.imsil.go.kr/)

적극행정 좋아요 !

☐ 적극행정이란?

공무원의 불합리한 규제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

▶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로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

▶ 새로운 아이디어, 전문적 지식 . 경험 역량을 통한 문제의 해결

▶ 업무열의를 바탕으로 통상적 노력과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처리 및 문제 해결

소극행정 안돼요 !

☐ 소극행정이란?

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

▶ 적당편의 :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

▶ 업무해태 :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

▶ 탁상행정 : 규정이 변해도 과거 규정을 따르거나,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

▶ 관중심행정 : 국민 편익이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

"적극행정 공무원!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."

하나되어, 모두가 행복한 임실

2.0

군민을 위한 변화

실천하는 적극행정, 신뢰받는 군정

임실군

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

☐ 적극행정위원회

목적 **적극적, 합리적 군민중심의 의사결정 지원**

역할 **적극행정 주요 정책의 심의 . 의결**

- ▶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심의 . 의결
- ▶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- ▶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사항

☐ 적극행정 교육 실시

목적 **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**

- ▶ 직장교육(연 1회 실시)
- ▶ 사이버교육 병행(연중)

※ 군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 강화

☐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

- ▶ 기관장 책임하에 매년 '적극행정 실행계획'을 수립
- ▶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, 지원

☐ 적극행정 소통강화

임실군 홈페이지 내에 적극행정 코너 운영

- ▶ 적극행정 제도 소개
- ▶ 적극행정 교육자료 및 우수사례 등 안내
- ▶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
- ▶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연계

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

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

근거 **[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] 제13조**

내용 **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 창출, 창의적 . 도전적 정책 추진 등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.**

- ▶ 연 2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설발

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

근거 **[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] 제14조**

내용 **적극적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,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,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.**

종류 **특별승진임용, 특별승급,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영금 최고 등급, 특별휴가,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단축, 근무성적 평정 가점, 근속승진 기간단축, 희망부서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**

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!
자발적으로 함께하는 분위기!
체계적으로 만들겠습니다.

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

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

- ▶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입안 . 정비
- ▶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를 위한 위임전결 규정 개정

☐ 사전 컨설팅제도 운영

대상 **인 .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및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**

- ▶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

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

요건

- ▶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
- ▶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- ▶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
- ▶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였을 것

[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 면책감경]

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

- ▶ 직무관련 민 . 형사상 소송비 지원
- ▶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